

定款
(정관)

주식회사 ○○○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업
2. ○○○○○○업
3. ○○○○○○업
4.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동산 임대업
5.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점은 ○○특별시(○○도 ○○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 신문에 게재한다.

제5조(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의 특례)

- ①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 의 또는 승인 사항으로 정한 것 중 상법 제38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주총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상법 제383조제5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이 정관의 조항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〇〇〇,〇〇〇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〇,〇〇〇원으로 한다.

제8조(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〇〇,〇〇〇주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5종으로 한다.
- ③ 주주는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제10조(주식의 양도 제한)

- 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식 양도의 승인 청구, 승인 거부의 통지, 양도상대방의 지정 청구 및 주식매수청구의 절차는 상법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의 경영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와 신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그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방법 중 주주총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한 자가 그 결의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상법 제34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가액 이상으로 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자기주식의 취득 · 보유 및 처분)

- ① 회사는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경영상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또는 사업상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경우
2.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3.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활용하는 경우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명의개서 등)

- 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그 밖에 계약 외의 사유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는 때에도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이익배당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〇〇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으로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그 기간 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〇〇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으로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20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소집한다.

제21조(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다.

제24조(의결권)

-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 상법 제434조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결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제27조(이사와 감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② 회사는 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0조(이사의 결원)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이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감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자기거래)

- ①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상법 제397조의2제1항 각 호의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상법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제33조(대표이사)

- ①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이사회에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에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35조(이사회에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에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따른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에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이사회에의 의사록)

이사회에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와 감사에의 보수)

- ① 이사와 감사에의 보수(급여, 상여금, 성과급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다만, 퇴직금은 제38조에서 따로 정한다)의 한도는 주주총회결의에 정한다.

- ② 제1항의 한도 내에서 개인별 보수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정하는 「임원보수 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른다.
- ③ 이사회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한도와 기준의 범위에서 개인별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개인별 보수의 결정을 대표이사 또는 특정 이사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제38조(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은 이 정관에서 위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개정된 규정은 개정 이후의 근속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이사의 책임감면)

- ① 회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 사

제40조(감사의 선임과 임기)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41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제409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대신한다.

제4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와 제38조를 준용한다.

제7장 계 산

제43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비치)

-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6조(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가 그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다.
-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일은 제16조제3항에 따른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한다.

제47조(중간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4. 중간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③ 회사는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배당금의 지급과 소멸시효)

- ① 회사는 이익배당 또는 중간배당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제2항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

회사 설립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상여금지급규정」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정한다.

제4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수	날인
발기인 대표		-		주	(인)
발기인		-		주	(인)
발기인		-		주	(인)